

7. 地方稅法施行規則中改正令

내무부령 제717호 1997. 10. 4

주 요 골 자

- 가. 새로이 신설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에 관한 사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수정신고납부의 절차 등을 정함(제36조 · 제36조의 2 및 제36조의 3).
- 나. 지방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39조 및 제39조의 2 내지 제39조의 5).
- 다. 구축물의 범위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추가하여 이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40조의 8).
- 라. 석유정제업자가 임대하는 석유판매용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6조의 9 제2호 및 제114조의 2).
- 마. 새로이 도입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현행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 2 서식 등).

개정이유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및 동법시행령(1997. 9. 대통령령 제1548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도세징수교부율”을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징수교부율”로 한다.

제33조 및 제33조의 2 내지 제33조의 9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중 “별지 제39호와 제40호 서식”을 “별지 제35호 서식 및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한다.

제35조중 “별지 제41호 서식”을 “별지 제37호 서식”으로 한다.

제1장에 제36조·제36조의 2·제36조의 3·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39조의 2 내지 제39조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6 조(세무조사의 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 36 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통지”라 함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제 36 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

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37 조(수정신고납부절차 등) ① 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하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 3 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1호의 4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41호의 5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한다.

③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41호의 6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41호의 7 서식에 의하여 배

달증명우편으로 한다.

⑤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41호의 8 서식에 의한다.

제 39 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다른 1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의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내무부의 차관보가,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제 국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 39 조의 2(분과위원회) ① 영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중 지방세분과위원회는 지방세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②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 39 조의 3(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장과 포함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9 조의 4(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소득 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제 39 조의 5(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0 조의 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 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의 5 제목 “(부동산시가표준액의 결정)”을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한다.

제40조의 6 제1항 중 “별지 제44호 서식”을 “별지 제48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는”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고,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0 조의 8(구축물의 범위) 영 제75조의 2 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

제41조 본문 및 제2호 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중 “특수목욕탕”을 “증기탕”으로 한다.

제46조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6 조의 9(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영 제84조의 4 제4항 제1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한 사용을 포함한다)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 중 임차인 등이 당해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영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되, 동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임대하여 석유판매

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제47조 제2항 제1호 나목·동항 제2호 라목 및 동항 제3호 다목 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67조의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에”를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부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제104조의 10 본증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4조의 12증 “제194조의 15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항 제3호”를 “영 제194조의 15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8 조(과세대상구축물) 영 제201조
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전망대

2. 옥외주유시설

제5장에 제1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 114 조의 2(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 기준) ①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제116조중 “법 제276조제2항”을 “법 제276조 제3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8 조(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 서식에 의하여 세목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8호 각목외의 부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목 내지 마목 및 아목은 법 제112조 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영 제142조의 2 제2항 및 규칙 제7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6호 서식을 별지 제41호의 8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7호

서식을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 제41호의 5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의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 서식을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1호 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8호 서식 내지 별지 제41호 서식·별지 제41호의 2 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 4 서식·별지 제41호의 6 서식 및 별지 제41호의 7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8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고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